

상품목이 축소 조정되어 전체 할당관세 품목수는 상반기 75개에서 하반기 48개로 줄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밀가루, 밀, 커피원두, 카세인 등 일부 품목이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할당관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적용됩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인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식품관련 적용품목 및 세율(%)

대두(5→0), 설탕(40→35), 원당(3→0), 맥주맥(30→15), 향료(6.5→4), 맥아(30→15)

※자세한 내용은 정책포탈 홈페이지(korea.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먹거리수입, 관세청이 사수한다

관세청은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을 위하여 “수입물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수행해 오고 있으며, 불법행위 차단을 통관단계에서 유통단계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유통이력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물품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국민건강 관련 물품에 대한 안전경보 발령시스템 구축, 수입검사 강화(검사율 6%→12% 상향), 전담분석팀 운영과 함께 탈크(활석) 통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비식용의 식용둔갑 등 위해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법방지 예방효과는 물론 유해물품 발견 시 Recall 조치 등 신속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통관안전대책 추진전략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로서,

- 이번 유통이력 품목확대(비식용천일염·대두유, 냉동 금밀복, 안경테)는 유통이력제도의 관세법 도입('09.5.27), 세부 추진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과 더불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어온

유통이력제도가 본 과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며, 관세청이 식탁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유통이력 대상품목 확대지정은 수입쇠고기 12개부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수입후 식용둔갑 등 유통단계에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정하였으며, 유통이력 신고 시기는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9. 8. 1일 수입신고 물품부터 적용합니다.

*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 등뼈, 내장, 혀, 소머리

- 새로이 제정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고시 주요내용으로서는

- 관세청장은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등 사기행위 예방이 필요한 물품 중에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하여 유통이력 대상품목을 5년의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 유통이력 대상품목의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양도 후 3일 이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하여 신고하거나 세관에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판매내역 및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하며,

- 유통중인 물품에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 하는 한편,

- 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장부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유통이력제도의 본격시행을 계기로

- 수입통관정보 및 유통이력정보를 시중 단속과 연계하여 문제점이 있는 취약업체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공동대응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문제발생시 사후대처보다는 취약분야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관세행정을 펼침으로써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